

세종 4-2생활권 L3BL, M5BL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금융결제원(www.ap2you.com)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합니다. 단, 거주요건 등의 우선순위기준을 해당 추천기관에서 정함.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아울러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및 일정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4-2생활권 L3, M5블록
- 주택명칭 :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 입주예정일 : L3BL 2021년 10월 예정 / M5BL 2022년 03월 예정
- 공급규모 : L3BL 지하1층 ~ 지상 20층, 총 318세대 / M5BL 지하1층 ~ 지상29층, 총 499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국민주택 공급물량 10%범위 내(국가유공자 별도책정)
- 모집공고일 : 2019.06.20.(목) 예정
-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19.06.25.(화) 예정
- 견본주택 오픈일 : 2019.06.21.(금) 예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3-3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견본주택
- 문의전화 :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분양사무실 T.1800-0919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6.20.(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당첨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되는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추천 순위에 의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 2019.07.03.(수) 당사 홈페이지(http://www.sejong.ihanulche.co.kr)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2you.com)에서 확인 가능 • 신청주택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결정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통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 2019.06.25.(화)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신청 대상자	신청 일정	신청장소
특별공급 신청기관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자	2019.06.25.(화) 예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www.ap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견본주택 방문 접수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입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10:00~14:00) -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4.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 등)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당첨관련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바람.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재당첨 제한기간	과밀억제권역	그 외 지역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당첨일로부터 5년 당첨일로부터 3년	당첨일로부터 3년 당첨일로부터 1년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 (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함.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 (분양권 등 포함)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산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을 의미함.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가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급금액, 전매제한/재당첨 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06.20.(목)]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건본주택, 인쇄제작용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jong.ihanulche.co.kr>
- 건본주택 약도 및 사업개요

건본주택 약도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총 817세대		
<p>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3-3번지</p>	블록	해당타입	세대수	비고
	L3블록	59A	141	전용 면적 기준
		59B1, 59B2	77	
		64A1, 64A2	40	
		67A	60	
		소계	318	
	M5블록	59A	106	
		59B1	58	
		74A	32	
		84A1	30	
		84A2	58	
		84B	114	
		84C	1	
		99A	46	
		99B	54	
소계		499		
합계		817		
※ 상기 주택형 및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위치도



6. 세종 하늘채 센터빌 차별화 가치

세종 하늘채 센터빌 또 한번의 기회 !



하늘채와 센터빌의 진심이 4-2생활권에 **하트블록**으로 찾아옵니다

PREMIUM 01

학교 **앞**

단지 앞 초·중교(예정)의 우수한 교육특구

PREMIUM 02

앞 선 교통

BRT, 외곽순환도로(예정) 대전/청주 등 접근성 우수

세종 하늘채 센터빌의 **앞** 도적 PREMIUM 6

PREMIUM 03

앞 선 미래가치

공공청사, 대학교, 테크밸리 등 직주근접 단지

PREMIUM 04

공원 **앞**

삼성천, 괴화산에 둘러싸인 자연명당

아파트 총 817세대 / 단지내 상가 8실 동시분양



PREMIUM 05

테크밸리 **앞**

수요가 풍부한 상가입지

PREMIUM 06

앞 선 설계

설계공모 브랜드단지